

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

식품위생법 제 7조제 1항 및 제10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증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.

1990. 1. 10

보 건 사 회 부 장 관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.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7. 성분규격 및 기준 1) 일반식품 성분규격 ②해산어폐류의 중금속 잔류허용 기준은 1991. 1. 1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	현 행	개 정
제3.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. 원료등의 구비요건 1) 식품원료 (5) 다음에 해당하는 동·식물성 또는 기 타 원재료는 식품의 제조·가공·조리용 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① 일반인들의 전래 적인 식생활관습 이나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 니하는 것 ② 상용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되 지 아니하는 것 ③ 기타 보건사회부 장관이 식용으로 부적당하다고 인 정하는 것	<좌 동> ①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, 취급, 가공, 제조 또는 판매되 지 아니한 것 ② 식품원료로서 안 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 는 것 ③ 신개발원료로서 안 전성에 대한 입증이 나 또는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것	7. 성분규격 및 기준 1) 일반식품성분규격 (2) 중금속 이 공전에서 중금 속에 대한 규격이 따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식품은 제 7. 일반시험법, 6. 유해성증금속시험 법 “4)증금속“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때 $10\text{mg}/\text{kg}$ 을 초과하여서 는 아니된다. 다 만, 그 식품에 원 래부터 함유되어 있는 증금속의 양 은 제외한다. ④ 기타 보건사회부 장관이 식용으로 부적당하다고 인 정하는 것	<좌 동> ② 증금속 ① 이 공전에서 7. 일반시험법, 6. 유해성증금속시험 법 “4)증금속“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때 $10\text{mg}/\text{kg}$ 을 초과하여서 는 아니된다. 다 만, 그 식품에 원 래부터 함유되어 있는 증금속의 양 은 제외한다. ②해산 어·폐류의 증

현 행	개 정	현 행	개 정
	<p>금속잔류허용기준 ②총수은 : 0.7mg/ kg 이하(심 해성 어·폐류 및 참 치류 제외) ④납 : 2mg/kg이하</p> <p>2) 자연식품 등의 성 분규격 (1) 콩나물의 수은함 량에 대한 잠정규정 ①총수은 : 0.1mg/kg 이하 (Hg로서)</p> <p>제4. 식품별 기준 및 규격 4. 유가공품 4-6. 밸효유류 10) 시험방법</p> <p>(3)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란 중에서 “멸균인산완충회석 액을”</p> <p>9. 식용유지 9-14. 우지 2) 원료의 구비요건 (1) 소의 지방조직은 품질이 양호하고 신선한 것이어야 함.</p> <p>(2) 원료는 흙, 모래, 짚 등과 같은 불순 물이 충분히 제거 된 것이어야 한다.</p> <p>(3) 원료는 품질변화 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.</p> <p>9-15. 돈지</p>	<p>2) 원료의 구비요건 (1) 돼지의 지방조직 은 품질이 양호하 고 신선한 것이여 야 한다.</p> <p>2) 원료는 흙, 모래, 짚, 등과 같은 불 순물이 충분히 제 거된 것이어야 한 다.</p> <p>(3) 원료는 품질변화 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.</p> <p>12. 청량음료 12-4. 유산균음료 10) 시험방법 (1) 유산균수 또는 효 모수란중에서 “멸균 인산완충회석액을”</p> <p>14. 영양 등 식품 14-1. 이유식 14-2. 효소식품 19. 주류 19-4. 고량주 7) 성분규격 (1) 성상 : 무색투명 한 액체로서 특유 의 향미가 있어야 함.</p> <p>제7. 일반시험법 8. 미생물시험법 1) 검체의 체취 및 취급 (1) 체취방법 ⑦시험에 사용되는 검체의 균질화를</p>	<p>〈좌 동〉</p> <p>(1) 돼지의 지방조직 은 축산물위생처리 법(수입품은 수출 국의 관계법)에 따 라 검사에 합격한 돼지로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한 것이어야 한다.</p> <p>(2) 원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신선하여 야 하며 품질의 변 화나 이물질 등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으로 취급하여야 한다.</p> <p>(3) 경제전의 원유는 식용을 목적으로 처리한 것이어야 한다.</p> <p>〈좌 동〉</p> <p>(1) 유산균수 또는 효 모수란중에서 “멸균 생리식염수로”</p> <p>14의 1. 건강보조식품 14의 1-1. 효소식품 14의 2. 특수영양식품 14의 2-1. 이유식</p> <p>〈좌 동〉</p> <p>(1) 성상 : 투명한 액 체로서 특유의 향 미가 있어야 한다.</p> <p>〈좌 동〉</p> <p>⑦시험에 사용되는 검체의 균질화를</p>

현 행	개 정	현 행	개 정
위하여 액상검체 인 경우에는 강하게 진탕하여 균질화하고 고형인 검체는 Homogenizer 를 이용하여 적당량의 회석액과 혼합하여 균질화한것을 검액으로 사용한다. (신 설)	위하여 액상검체 인 경우에는 강하게 진탕하여 균질화하고 고형 및 반고형인 검체는 Homogenizer 를 이용하여 적당량의 회석액과 혼합하여 균질화한것을 검액으로 사용한다. (⑧칼·도마 및 식기류에서 검체를 채취할 때에는 멸균한 탈지면에 멸균 생리식염수를 적셔 검사하고자 하는 기구의 표면을 완전히 닦아낸 탈지면을 무균용기에 넣어 시험용액으로 사용한다.	15) 시 액 (1) 멸균인산완충회석액 인산2수소칼륨(KH ₂ PO ₄)34 g 을 증류수 500mℓ에 녹이고 여기서 0.1N-NaOH 용액 174mℓ를 가하여 전량을 1,000 mℓ로 하고 pH가 7.2 되도록 수정한다. 이를 원액으로 하여 냉장고에 저장하고 사용시에는 이 원액 1mℓ를 증류수 또는 생리식염수 800mℓ에 가하여 121°로 15분간 멸균한다.	15) 시 액 (1) 멸균인산완충회석액 인산2수소칼륨(KH ₂ PO ₄)34 g 을 증류수 500mℓ에 용해하고 1N-NaOH 175mℓ를 가하여 pH를 7.2로 수정하고 여기에 증류수를 가하여 1,000mℓ로 하여 인산완충원액으로 한다. 이것을 121°C에서 20분간 멸균한 다음 냉장고에 보존한다. 사용시에는 이원액 1mℓ를 취하여 멸균증류수 800mℓ에 가하여 회석하고 이것을 멸균인산완충회석액으로 한다.
(2) 시험용액 ②우유 및 유제품관에서 “멸균인산완충회석액을”	(2) 시험용액 ②우유 및 유제품관에서 “멸균생리식염수로”	(2) 생리식염수 Sodium chloride 8.5 g, Distilled water 1,000mℓ, 멸균은 15파운드(121°)로 15분간 고압증기 멸균한다. (신 설)	(2) 생리식염수 Sodium chloride 8.5 g에 증류수를 가하여 1,000mℓ로 하여 15파운드(121°)로 15분간 고압증기 멸균한다. (신 설)
8) 유산균수 이 시험은 발효후 또는 유산균음료증의 유산균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. 유산균수의 측정방법은 2) 세균수(일반세균수) 측정방법에 준하여 시험한다. 다만, 배지는 BCP가 평판측정용배지(배지11)를 사용하여 35~37°에서 72±3시간 배양한 후 발생한 황색의 접락을 유산균의 접락으로 계측한다.	8) 유산균수 이 시험은 발효후 또는 유산균음료증의 유산균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. 유산균수의 측정방법은 2) 세균수(일반세균수) 측정방법에 준하여 시험하되 검체의 회석액은 멸균생리식염수를 사용한다. 다만, 배지는 BCP가 평판측정용배지(배지11)를 사용하여 35~37°에서 72±3시간 배양한 후 발생한 황색의 접락을 유산균의 접락으로 계측한다.	12. 방사능 잠정허용기준시험법 본 시험방법은 방사성물질중 감마선방출방사성물질을 검색하는 것으로 위생상 중요문제가 되는 핵종을 주 대상으로 한다. 또한 검출한도와 정량감도의 범위는 식품의 방사능오염이 위생상 문제가 되는 농도 범위로 한다.	12. 방사능 잠정허용기준시험법 : 별첨 13. 아플라톡신잠정허용기준시험법 : 별첨

1. 전처리방법

핵종분석 및 방사능계측을 수행하기전 시료를 측정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
(1) 직접법

① 가공원료

- ⓐ 분말인 경우 측정용기에 압축하여 넣고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고르게 한다.
- ⓑ 측정용기에 충전된 시료의 중량(측정용기의 중량은 제외)을 정밀히 달고 밀봉하여 시료표본으로 한다.
- ⓒ 액체(액기스 또는 케찹 포함)인 경우 그대로 측정용기에 넣고 중량을 정밀히 달아 밀봉하여 시료표본으로 하거나 적당량으로 농축해 측정용기에 넣고 중량을 정밀히 달아 밀봉하여 시료표본으로 한다.

② 가공식품

- ⓐ 시료가 균등하게 되도록 분쇄기로 갈아(거품이 발생하는 경우 알콜을 넣어 거품을 제거) 측정용기에 넣고 중량을 정밀히 달아 밀봉하여 시료표본으로 한다.
- ⓑ 측정중 부패의 우려가 있는 경우 포르마린(포름알데히드 37% 용액)을 2mℓ/1비율로 첨가하고 밀봉하여 시료표본으로 한다.

③ 자연산물

- ⓐ 시료가 균등하게 되도록 분쇄기로 갈아 측정용기에 다져 넣고 전항과 같이 처리한 후 중량을 측정한다.
- ⓑ 측정중 부패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항 ⓑ와 같이 처리하여 시료표본으로 한다.

④ 곡류등

- ⓐ 식용으로 쓰이지 않는 부분(껍질등)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분쇄기로 갈아 분말로 만든다.
- ⓑ 이 분말을 측정용기에 넣고 검출효

율을 높이기 위해 압축하여 체적을 최소화시키고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고르게 한다.

- ⓓ 측정용기에 충전된 시료의 중량(측정용기의 중량은 제외)을 달아 이를 시료표본으로 한다.

⑤ 채소류등

- ⓐ 식용으로 쓰이지 않는 부분(뿌리, 토사, 고엽 등)을 제거(물로 세척할 경우 물기를 제거)한 후 막서기로 갈아 균질한 분포가 되게 만든다.
- ⓑ 이때 거품이 발생되므로 n-에칠알코올을 여러방을 적하하여 거품을 제거한다.
- ⓒ 측정중 부패의 우려가 있는 경우 포르마린(포름알데히드 37% 용액)을 시료 1ℓ에 대하여 2mℓ를 첨가할 수 있다.
- ⓓ 상기용액을 측정용기에 넣고 시료의 중량을 정밀히 달고 밀봉하여 시료표본으로 한다.

⑥ 식육류등

- ⓐ 식육류등은 식용으로 쓰이지 않는 부분(뼈, 껌질, 비계, 가시등)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고 분쇄기 또는 막서기로 갈아 균질한 분포가 되도록 한다.
- ⓑ 측정중 부패의 우려가 있는 경우 포르마린(포름알데히드 37% 용액)을 시료 1kg에 2mℓ를 가할 수 있다.
- ⓓ 측정용기에 그대로 옮기고 기포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져 넣어 체적을 최소화 한다.
- ⓔ 상기 시료의 중량을 달고 밀봉하여 이를 시료표본으로 한다.

⑦ 우유류

- ⓐ 우유류 등은 원유인 경우 측정중 부패로 인한 유정의 분리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때 1ℓ에 포르마린(포름알데히드 37% 용액)을 10mℓ 가한다.

- ④ 이것을 측정용기에 그대로 옮기고 밀봉한다.
 - ⑤ 유제품(분말)인 경우 그대로 측정용기에 넣고 용기의 가장자리를 가볍게 두드려 내용물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한 후 체적이 최소화되도록 다지고 상충을 수평이 되게 한다.
 - ⑥ 상기 시료의 중량을 달고 밀봉하여 이를 시료표본으로 한다.
- (2) 건조법
- ① 수분이 많은 식품은 1~2일간 바람에 건조시키고
 - ② 분쇄하기 쉬울때까지 105°C의 열풍건조기내에서 건조한다.
 - ③ 충분히 건조된 것은 습기가 재흡수되기 전에 분쇄기를 사용하여 분말로 만든다.
 - ④ 측정용기에 분말을 넣고 균질한 분포가 되도록 압축하여 체적을 최소화시킨 후 중량을 달고 밀봉하여 이를 시료표본으로 한다.
 - ⑤ 건조전후의 중량비로 결과를 환산한다.

(3) 회화법

- ① (2)의 ①~②까지 처리된 시료를 전열기 또는 까스버너로 온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가연성가스가 나오지 않게 될때까지 탄화한다.
- ② 탄화된 것을 회화로에 넣고 500°C를 넘지 않는 온도로 회화하여 재가루가 쉽게 될 수 있는 정도로 만든다.
- ③ 회화된 것을 유발에서 충분히 분쇄 혼합하여 측정용기에 압축하여 넣는다.
- ④ 상기 시료의 중량을 달고 밀봉하여 이를 시료표본으로 한다.
- ⑤ 건조전 및 회화전후의 중량비로 결과를 환산한다.

2. 방사능 핵종시험

다중파고분석기와 고순도 Ge검출기를 사

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.

- (1) 사용장치의 명칭, 형식, 측정조건, 시료의 명칭, 종류, 상태 등을 기록한다.
- (2) 측정장치의 전원을 가하고 Background를 측정한다.
- (3) 시료의 최소 측정시간은 10,000초로 한다. 필요한 경우 가감시킬 수 있다.
- (4) Background는 시료측정 전후로 측정하여 평균치를 취한다.
- (5) 표준선원의 에너지피크를 구하고 측정에너지 범위가 0~2MeV가 되도록 증폭기의 게인을 조정한다. 필요한 경우 측정에너지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 하여도 좋다.
- (6) 찬넬수에 대응하는 에너지를 표준선원을 이용하여 교정한다.
- (7) 차폐용기내의 검출기에 시료를 올려 놓고 일정시간 스펙트럼을 측정한다.
- (8) 나타난 피크에너지에 대응하는 동위원소를 동위원소표에 있는 것과 대조하여 핵종을 찾는다.

3. 방사능시험

- (1) 2)의 ①~⑦를 행한다.
- (2) 얻어진 스펙트럼을 참조하여
 $I - 131[0.0802(2.6\%), 0.284(6.1\%), 0.364(81\%), 0.637(7.3\%) \text{ MeV}]$
 $Cs - 134[0.569(15\%), 0.605(98\%), 0.796(85\%) \text{ MeV}]$
 $Cs - 137[0.662(85\%) \text{ MeV}]$

에서 감마선 방출비율이 가장 큰 각 핵종에 대한 피크에너지($0.364, 0.605, 0.662 \text{ MeV}$)의 3배 반치폭에 피크에너지 영역으로 하고 낮은 에너지측의 L찬넬, 높은 에너지측의 H찬넬을 취하여 피크면적을 다음식으로 구한다.

$$S = \sum_{i=L+1}^{H-1} N_i - \frac{H-L-1}{6} \left[\sum_{i=L-2}^L N_i + \sum_{i=H}^{H+2} N_i \right]$$

여기서 N_i 는 찬넬 i 에서의 계수값

- (3) 감마계수효율 ϵ 은 피측정검체와 같은

형상(가능하면 동일조성의 동일 형상)으로 만들어진 표준선원에 따라 구한다. 이때 몇개의 에너지에 대한 효율 ϵ 을 구하여 에너지와 효율과의 관계를 $\log \log$ 방안자에 그리면 에너지 >0 . 15MeV 영역에서 거의 직선상의 그래프가 얻어진다. 이 그래프로부터 목적하는 에너지에 대한 계수효율을 내삽으로 구할 수 있다.

(4) 각 핵종에 대한 방사능 A는 다음식으로 산출한다.

$$A = \frac{S}{\epsilon pt} Bq$$

여기서 ϵ 는 에너지피크에서의 감마계수효율
p는 동에너지의 감마방출률
t는 측정시간(초)

(5) 얻어진 결과의 표준편차 ΔA 는 다음식으로 산출한다.

$$\Delta A = A \sqrt{\frac{SG + K^2 SB}{S}}$$

여기서

$$SG = \sum_{i=L+1}^{H-1} Ni, \quad SB = \sum_{i=L-2}^L Ni + \sum_{i=H}^{H+2} Ni$$

$$K = \frac{H-L-1}{6}$$

13. 아플라톡신 잠정허용기준 시험법

1) 박층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정성 및 정량

(1) 시약

- ① 박층크로마토그라피용 실리카겔 : Silicagel(0.05~0.2mm)이나 그와 동일한 것
- ② 칼럼크로마토그라피용 실리카겔 : 110°C에서 60분간 가열하여 활성화한 것.
- ③ 전개용매 : 클로로포름 : 아세톤(9:1)

(2) 아플라톡신 표준용액(각 표준원액 및 표준용액은 알루미늄박으로 싸서 냉

장고에 보존한다)

① 아플라톡신표준원액 : 아플라톡신 B₁, B₂, G₁ 및 G₂ 각 10mg을 달아서 벤젠·아세토니트릴혼액(98:2)에 녹여 정확히 각 100mℓ로 한다.

② 아플라톡신혼합표준용액 : 원액 1mℓ씩을 분취, 혼합하여 앞의 혼액으로 정확히 100mℓ로 한다.

아플라톡신혼합표준용액 : 1mℓ=B₁, B₂, G₁, G₂ 각 1 μg

③ 아플라톡신 B₁표준용액 : 아플라톡신 B₁원액 1mℓ를 취하여 앞의 혼액으로 정확히 200mℓ로 한다.

아플라톡신 B₁표준용액 1mℓ=0.5 μg

(3) 시험용액의 조제

① 추출

시료를 분쇄하여 50g을 blender-cap에 달아 넣고 메탄을 200mℓ를 가하여 5분간 교반, 추출한다. 혼합물을 즉시 여과하여 여액 100mℓ를 분액깔때기에 옮겨 1% NaCl용액 100mℓ를 넣어 섞고 헥산 100mℓ를 넣어 진탕한 후 헥산층을 버린다. 메탄을 · 물층에 클로로포름 50mℓ를 넣어 섞고 5분간 격렬하게 진탕한 후 클로로포름층을 분취한다. 다시 클로로포름 50mℓ를 넣어 앞의 조작을 반복한다.

클로로포름층을 합하여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하고 감압하에서 약 20mℓ까지 농축하여 추출액으로 한다.

② 정제

크로마토그라피용칼럼(22×500mm)에 무수황산나트륨 약 5g을 넣고 클로로포름을 칼럼높이의 약 반까지 채운 후 실리카겔 10g을 천천히 넣고 소량의 클로로포름으로 씻는다. 실리카겔이 충전되면 주의해서 무수황산나트륨 10g을 넣고 플로로포름이 황산나트륨의 상층에 약간 남을 때까지 유출시킨다.

이 칼럼에 앞의 추출액을 넣어 용매를 거의 흘려보낸 후 헥산 150mℓ, 그 다음에 에텔 150mℓ를 흘려보내 칼럼을 씻는다. 계속

해서 클로로포름·에탄올혼액(97:3) 200mℓ를 약 10~15mℓ/min의 속도로 흘려 보내어 아플라톡신을 용출시킨다.

용출액은 감압하에서 농축건조 한다.* 잔류물에 0.5mℓ의 벤젠·아세토니트릴혼액(98:2)을 넣어 마개를 하여 심하게 혼들어서 완전히 녹여 시험용액으로 한다.

(4) 시험조작

박층판($20 \times 20\text{cm}$)의 하단에서 2cm의 곳을 원선으로 하여 시험용액 5~20 μl , 아플라톡신 B_1 표준용액 10 μl 및 아플라톡신혼합표준용액 2~20 μl 를 도포한다.

박층판은 클로로포름·아세톤혼액(9:1)으로 미리 포화한 전개조에서 약 10cm 전개하고 박층판의 용매를 휘산시킨 후 자외선(365nm)을 조사하여 박층판상의 아플라톡신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의 형광 및 Rf치를 비교하여 측정한다.

2) 액체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정성 및 정량

(1) 시약

- ① 이동상: 물·아세토니트릴(3:1)
- ② 아플라톡신혼합표준용액: 앞의 1)
박층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정성 및 정량중의 아플라톡신혼합표준용액 5mℓ를 취하여 벤젠·아세토니트릴혼액(98:2)으로 정확히 100mℓ로 한다.
아플라톡신혼합표준용액 1mℓ= B_1 , B₂, G₁, G₂, 각 50ng
- ③ 아플라톡신 B_1 표준용액: 앞의 1)
박층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정성 및 정량중의 아플라톡신 B_1 표준용액 10mℓ를 취하여 앞의 혼액으로 정확히 100mℓ로 한다.
아플라톡신 B_1 표준용액 1mℓ=50ng

(2) 장치

- ① 칼럼: u-Bondapack-C₁₈ 또는 이

와 동등한 것.

- ② 검출기: Fluorescence detector
- ③ 여과지: Whatman No. 2(7.0cm) 또 는 이와 동등한 것.

(3) 시험용액의 조제

앞의 1) 박층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정성 및 정량 (3) 시험용조제 ① 추출 및 ② 정제에 따라 까지 시험하고 이후부터는 아래의 조작에 따른다.

〈트리플루오로아세칠화〉

잔류물에 Trifluoroacetic acid(TEA) 0.1mℓ를 가하여 Vortex로 1분간 섞고 다시 아세토니트릴·물(1:1) 4mℓ를 넣어 Vortex로 1분간 섞는다. 이 혼액에 아세토니트릴·물(1:1)용액을 가하여 일정량(5~10mℓ)으로 한 후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.

(4) 검량선 작성

아플라톡신혼합표준용액 및 아플라톡신 B_1 표준용액 일정량(5~10mℓ)를 취하여 질소가스로 용매를 완전히 유거시킨 후 (3) 시험용액의 조제중의 트리플루오로아세칠화에 따라 조작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.

(5) 시험조작

(액체크로마토그라피의 측정조건의 예)

- Excitation Wavelength : 365nm
- Emission Filter : 418nm
- Gain : 8x
- Chart Speed : 20cm/HR
- 유량: 1mℓ/min

시험용액, 아플라톡신혼합표준액 및 아플라톡신 B_1 표준용액 5~20 μl 를 앞의 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라프에 주입하여 얻어진 표준 용액 및 시험용액의 피크와 유지시간(Retention time)을 비교해서 정성을 하고, 얻어진 피크의 높이 또는 면적을 측정하여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아플라톡신의 함량을 정량한다.